

#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질의/응답

\*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, 구체적 상담은 유선통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경기복지재단 (☎ 070-4659-5009)

## 접수

### 1 신청서 교부는 ?

-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(ggwf.gg.go.kr)에서 신청서식 다운 후 작성해서,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 접수

※ 경기복지재단 - 재단소식 - 공지사항

### 2 신청서 접수방법은 ?

-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(방문접수 불가)

※ 수신처 :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(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25, 5층)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(dltjsdl5@ggwf.or.kr)

### 3 제출서류는 ?

- 지원신청서 (1부), 사업계획서 (1부)

※ 신청서식 참조

- 직인 또는 날인 필수

### 4 접수 확인은?

- 경기복지재단 사업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통화로 접수 확인 (☎ 070-4659-5009)

## □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

### 1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원가능한지?

-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.  
임차인 대표자회의에서 협의를 진행하여, 임차인 대표가 신청하면 됨

### 2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도 지원 가능한지?

- 올해는 경비 노동자 대상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.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추진 검토 중

### 3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, 경비초소 개선도 지원 가능한지?

- 독립된 별도의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단순 경비초소를 개선하는 경우는 불가함
- 다만, 경비초소와 휴게시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, 휴게시설이 별도의 독립된 휴게공간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(칸막이, 가벽 등) 선정에서 불이익 없음

### 4 시·군 지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중복 지원가능한지 ?

- 지원 가능  
※ 시·군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. 단, 같은 항목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

5

**노인정 등 기존 시설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 ?**

- 기존 시설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
- 다만, 노인정 등 법정 필수시설의 경우 의무 면적을 충족하고,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되, 선정단지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

6

**최근 휴게시설 개선 공사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, 개선 공사에 사용된 기 정산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?**

- 휴게시설 개선 공사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 신청 불가

7

**기존 지하공간(피트공간\*) 등에 임의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대상인지?**

- \* 건축설비나 각종 배관 등을 설치 또는 통과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(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)
- 공동주택관리법,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여,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 공간의 경우 지원 가능

※ 공동주택 내 층축·용도 변경 등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55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

-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경우 향후 등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기재하면 지원가능

\* 지원금은 사업기간 내 건축물대장 등재 후 교부. 단, 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, 사업기간 연장가능

**8 지원금액은?**

- 도에서 500만원 한도로 총 개선비용의 90%를 지급.  
(자부담 최소 10% 필수)

예시) 총 개선비용 400만원 : 도 360만원 지원, 자부담 40만원

예시) 총 개선비용 600만원 : 도 500만원, 자부담 100만원

예시) 총 개선비용 555만원 : 도 499만 5천원, 자부담 55만 5천원

**9 지원대상 선정 후,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방법은?**

- 도에서 해당 단지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신청한 예산을 지원하고, 향후 선정단지 책임하에 시설 개보수 및 비품구입 등 사업 진행. 사업 진행 후 정산

**10 아파트 한곳에서 휴게시설 2개를 개선하다면 지원신청도 2개가 가능한지?**

- 아파트 단지 한곳당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. 아파트 한곳에서 휴게 시설 2개를 개선하는 계획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

**11 에어컨, 정수기 등 비품구입도 가능한지?**

- 가능함. 단, 정수기 등의 경우 렌탈보다 일시불 구입 권고  
※ 렌탈의 경우 사업완료 기간인 7월 31일까지의 비용만 인정

**12 사업예산 기재시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지?**

- 견적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. 다만, 차후 정산 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

**13 휴게실 내 화장실, 샤워실 등 개선에도 지원이 가능한지?**

- 가능함

**14 기존 휴게실이 없어 신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?**

- 가능함 (신축의 경우 가점 발생)

**신축 관련 문의**

**1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컨테이너 등 가건물도 가능한지?**

- 가능함. 단,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지원단지가 진행.
- 교부금은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신청 후 승인되면 지급

**2 기존 휴게시설이 없어서 신설을 할 경우, 심사기준표 상 노후화 점수는 ?**

- 신청 공동주택의 사용승인년도에 따라 점수배정

## 부대 사업 관련

### 1 인식개선 사업은 아파트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지?

- 홍보물 등을 도 예산으로 제작하여 선정단지에 교부할 예정. 자체예산 계획 수립 불필요

### 2 상생협약의 내용 및 제출기간은 ?

- 공고문의 첨부4 예시 협약문 참조하여 단지 상황에 맞게 작성
- 선정단지 발표 후 한달 이내 협약서 체결하여 경기복지재단에 제출 (5. 10. 까지)